

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5 ~ 11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5. 11. 26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이 일부 개정되어(2015. 7. 1)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 내용 반영하여 쓰레기봉투 감면대상 구체화함.
(안 제23조)

○ (현행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
⇒ (개정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나. 용어순화 및 법령 인용조문 변경함.

○ 이라 함은 ⇒ 이란, 당해 ⇒ 해당, 동 ⇒ 같은, 기타 ⇒ 그 밖에,
규정에 의하여(의한) ⇒ 에 따라(따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및 제7조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, 제2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'15. 10. 28. ~ 11. 17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4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(중전의 제14호)까지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·제3호·제4호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의3제2항제3호, 제18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의3제2항 본문, 제11조제2항, 제12조제3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의4제1항, 제5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·제2항, 제12조제1항·제2항·제4항, 제18조제2항, 제19조제2항, 제25조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(이하 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”이라 한다) 기타”를 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시행규칙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의

규정에 따른”으로, 같은 조 제7항 중 “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“동”을 “같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 중 “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·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(이하 “공사장생활폐기물”이라 한다)”를 “공사장생활폐기물”로 한다.

제3장 및 제13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”을 “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에 따라”로 “타”를 “다른”으로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”으로 “각호에 의한다.”를 “각 호에 따른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동조 제1항제3호”를 “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23조 각 호외의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별지 제1호·제2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같은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및 같은법시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생활폐기물"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,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,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.</p> <p>2. "사업장생활계폐기물"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중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「대기환경보전법」·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.</p> <p>3. "대형폐기물"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, 가전제품, 사무용기자재, 냉·난방기등 별표 5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.</p> <p>4. "재활용가능폐기물"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-----이란----- -----에 따른-----에 따른----- -----</p> <p>2. -----이란----- -----에 따른----- -----</p> <p>3. -----이란----- -----에 따른-----에 따른----- -----</p> <p>4. -----이란----- -----에 따른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5. "대행"이라 함은 군수를 대신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·운반·처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6. "건설폐기물"이라 함은 구조물의 철거,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 (벽돌, 블록등), 목재류, 철재류,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.</p> <p>7. ~ 11. (삭제 2004.02.10)</p> <p>12. "문전수거"라 함은 배출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배출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가 직접 상차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3. (삭제 2004.02.10)</p> <p>14."공사장생활폐기물"이라 함은 생활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·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</p> <p>제4조의3(청결유지 조치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 하여야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 략) 3.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</p> <p>제4조의4(청결유지 이행) ①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5.-----이란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6.-----이란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삭 제></p> <p>7.-----이란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4조의3(청결유지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에 따라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----- -----</p> <p>제4조의4(청결유지 이행) ①----- -----에 따른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,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(이하 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”이라 한다) 기타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·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(이하 “폐기물처리장”이라 한다)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5조(적용범위) ① ----- -----에 따른-----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그 밖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) 군수는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제6조(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) ----- -----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) ①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(이하 "쓰레기 봉투"라 한다)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, 연탄재, 대형폐기물, 재활용 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·운반·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~ ⑥ (삭제 2004.02.10)</p> <p>⑦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) ①----- -----에 따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⑦ -----에 따라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)</p> <p>① 군수는 제7조의 <u>규정에 의한</u>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<u>당해</u>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,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, <u>동</u>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·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 <u>규정에 의한</u>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<u>규정에 의한</u> 과태료 부과 및 <u>당해</u>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. 다만,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 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)</p> <p>① -----<u>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<u>해당</u>----- ----- -----<u>같은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<u>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<u>에 따른</u>----- -----<u>해당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8조의2(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)</p> <p>① <u>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·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(이하“공사장생활폐기물”이라 한다)</u>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고,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8조의2(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)</p> <p>① <u>공사장생활폐기물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의 대행)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는 법 제25조 <u>규정에 의한</u>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의 대행) ① -----<u>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<u>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<u>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제1항의 <u>규정에 의하여</u>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·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대행자는 법, 영,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③ <u>----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<u>--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u>제3장 폐기물수집·운반·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</u></p>	<p><삭 제></p>
<p><u>제13조(폐기물처리업 허가)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군수는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·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군수는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시설등을 추가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<p><u>제16조(쓰레기 봉투의 제작) ① ~ ③ (생 략)</u></p> <p><u>④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</u> <u>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</u> <u>단체표준</u> <u>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</u> <u>쓰레기</u> <u>봉투사양은 "별표 2"와 같다.</u></p> <p><u>⑥ (생 략)</u></p>	<p><u>제16조(쓰레기 봉투의 제작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④-----경우</u> <u>에는 환경부가 제시한</u>-----</p> <p><u>⑤ 제2항에 따른</u>-----</p> <p><u>⑥ (현행과 같음)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수수료의 감면등)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</p> <p>2. (생 략)</p> <p>제25조(보고, 검사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제출 장부검사등의 요구가 있을때 관련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.</p>	<p>제23조(수수료의 감면등)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 -----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5조(보고, 검사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에 따른----- ----- ----- -----</p>